



방통위,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제외”

올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회원 실명 인증을 받고 보안 서버에 회원들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저장, 관리해야 한다.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번에 지정된 적용 대상은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다.

올해는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던 167개 웹사이트 중 115개 웹사이트는 변경이 없고, 52개가 제외, 새롭게 31개가 선정되었는데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등 미디어 부분에서 14개가 신규 포함되었다.

52개가 제외된 것은 방통위가 선정기준을 2010년 이전에는 3개 조사기관(메트릭스, 코리안클릭, 랭키닷컴)의 평균값으로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한 반면, 올해부터는 기준을 강화해 3개 기관의 조사결과 '모두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서 게시판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2011년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그간 본인확인제를 따르고 있던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페이지·카페에 대해서

도 미적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SNS를 통해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인 소셜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新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개선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참조) 영국 축구협회, “트위터와 같은 SNS는 공적 영역이다”

영국의 축구선수 라이언 바벨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판을 비난했다가 가액의 벌금을 물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2011년 1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의 주심이었던 하워드 웹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바벨에게 1만 파운드(원화 1천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이들은 어떠한 말이라도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리버풀의 공격수인 바벨은 맨유와의 경기에서 1-0으로 패한 뒤 웹 주심을 조롱하는 사진과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바벨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 경기에서 웹 주심이 맨유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한편, 리버풀의 스타플레이어인 스티븐 제라드를 퇴장시켰기 때문이다.

법원조정센터, 2010년 후기 성공조정사례 30선 선정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조정센터가 출범하였다.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측된다.

법원조정센터는 2010년 후기 조정사례 30건을 선정했는데, 비자 수속비반환부터 신차의 잦은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 주차장 사용방해 금지, 동시간 수용보상금 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분쟁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많아 피신청인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카펫을 사서 깔아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하고, 이사비용중 일부인 500여만 원을 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문제가 되는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는 소음에 불과한 정도이고,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을 낸 일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임 조정위원은 소음의 발생원인은 윗층의 과도한 소음 발생일 수도 있지만, 건축시 층간 방음처리 불충분일 수도 있고, 신청인이 과민 반응일 수도 있어서 이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게 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소음의 이유, 발생원인 및 정도(일반적으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인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점을 판사가 금방 알아볼 수

없을 터인즉, 꼭 승패의 판가름을 내려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낮과 밤으로 나누어 두 번,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살던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터인즉, 한때 이웃이었으니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설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백화점 바닥의 참기름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백화점의 책임

피신청인은 모 백화점에서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려다가 에스칼레이터 입구 바닥에 깨어진 병에서 새어나온 참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입과 입전 코트가 참기름에 오염되고, 깨진 유리 때문에 들고 있던 가방, 신고 있던 신발, 착용 중이던 시계가 손괴가 되었으며, 정형외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0,000 원을 포함하여 도합금 15,331,980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백화점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보험회사는 수리비 130,000 원, 의류 세탁비 45,980 원, 치료비 207,530 원, 위자료 250,000 원, 도합금 580,000 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상임 조정위원은 쌍방에 대하여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쌍방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피신청인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그 백화점의 평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화점은 신청인이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여 주지 않는데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될 것이므로 금액에 있어서 양보를 할 것을 제안, 쌍방은 최종적으로 상임조정위원이 제시하는 금 2,000,000 원에 합의하였다.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형사상 명예훼손죄 삭제 권고

작년 5월 방한해 외교부, 인권위 등 다수의 정부기관 및 인 권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던 프랭크 라튀 유엔 의사 표 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발전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정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 해 초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라튀 보고관은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 원 의사표현의 자유권,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 8개 분야에서 우려를 표하고 우리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다수의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명예훼손 금지규정 이 만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형법에서는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 수 단의 개선을 검토하고, 신분 확인 대상자가 범위를 자지를 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터넷에서의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의 적정한 운영과 회원의 공공 관심사에 관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 아니다

정모씨는 2009년 5월 자신이 가입된 모 환경단체 홈페이지 지에 단체 대표 박모씨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의 내용이 담긴 '박모씨 자격정지 하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 재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올해 1월 22일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 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주된 목적 은 단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상임대표인 피해자를 제명하 기로 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명을 위한 소집질타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사후에 다퉈야 할 문제"라며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단체 회원의 공공의 관심 사안이며, 노출대상이 회원에 국한 된 점, 인격 비하 표 현이 없다는 점, 비록 피해자의 개인적 피해가 적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그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안기부 X파일' 관련

도청된 대화내용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과 관련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 집장에게 모두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고, 보도시점에서 8년 전 대화가 비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고 도청자료 입수 과정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방법의 상당성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김 전 편집장도 자료의 취득과정이나 보도 방법 등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언론사가 불법 감청 결과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보도함으로써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보도로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 등 5명의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실체를 고발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 특정 대통령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장차 인·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석 띄움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인기부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그 다음달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이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보도했고 그 내용 중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이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이 기자에게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한편, 검찰은 인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도청된 X파일인 만큼 그 내용을 가지고 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즉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 이룬(독과수이룬)을 내세워 도청된 파일에 등장하는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日 최고재판소 취소광고 게재 결정

“스모 승부조작 기사충분한 증거없어 취소한다”

일본의 고단샤(講談社)는 자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주간현대(日本씨름(스모)계의 승부조작 의혹을 보도한 4개의 기사와 관련, 2010년 11월 15일에 발매된 동지 11월 27일호에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기사를 취소한다」는 취소광고를 게재했다.

일본 신문협회보(2010년 11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 취소광고의 대상은 카타노우미(北の湖) 전 이사장이 현역 시절 승부조작을 했다고 보도한 주간현대 2007년 3월 10일호와 전 요코쓰나(横綱) 아사쇼오류(朝青龍) 등의 승부조작을 보도한 2010년 2월 3, 10, 17일호의 각 기사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스모 승부조작 기사가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지난 10월 21일 함께 4,400만엔의 손해배상과 함께 취소광고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주간현대는 고단샤 대표이사, 주간현대의 발행인, 편집장, 집필자 등의 공동명의로 취소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주간현대는 취소광고와 함께 「취소광고는 한법위반」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을 2페이지에 걸쳐 게재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19조에 대해서도 언급, “승부조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까지 개입하는 것은 최고재판소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삿바로지법, NHK가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일본 삿바로시의 사진작가인 나와다 라이신(綿田頼信)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NHK의 뉴스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물을 침해당했다고 NHK를 상대로 약 1,076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삿바로 지법은 지난해 11월 10일 ‘사사사건 보도의 경우 저작권은 제한된다’는 NHK의 주장을 물리치고 4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신문협회보(2010년 11월 30일자)에 의하면, NHK의 기자들은 풍력발전 투자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을 취재하면서 사무실에 걸려있는 나와다씨의 풍차 사진을 촬영, 2008년 4월 2일 한 종합상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일본 최초의 대규모 풍력발전 펀드를 구축해 놓았다’는 내용의 뉴스프로에서 방송하였다.

재판부는, ‘사진의 영상은 사사 사건의 보도’라는 NHK의 주장에 대해 피사체와 펀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쪽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NHK, “뉴스영상 증거채용 안된다”

2010년 겨울호 기간지 언론중재 일본동향편에서는 ‘일본 방송사들 “뉴스영상 보도 목적 외 사용 안된다’는 제목으로 뉴스영상이 법원의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일본 방송사들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신문협회보(2010년 8월 31일자) 기사를 인용해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한 지방법원이 뉴스영상을 증거로 채용해 해당 방송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문협회보(2010년 11월 23일자)에 의하면 가고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6일 가고시마시에서 고령의 부부를 살해한 강도살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무단으로 제출한 NHK의 뉴스영상을 증거로 채용했다. 증거로 채용된 영상은 한국에서의 지문위조사건을 보도한 영상이며, 변호인은 지문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NHK는뉴스영상의 보도목적이외사용은유감이라는내용의 항의문을가고사지방법원과 변호인에게 전달, "영상을사실인정의증거로하지말라"고요구했다.

도쿄지법,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정보를 수록한 서적에 대해 프라이버시침해 인정

신문협회보(2010년 12월 7일자)에 의하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상에 유출된 경찰의 국제테러에 관한 수사자료를 수록한 서적에 대해 출판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서적에 실명과 얼굴 사진이 게재된 재일 이슬람교도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된 서적은 제3서판이 11월 25일에 간행한 유출 『공안테러정보』 전 데이터이며, 이 서적에는 인터넷에 유출된 경시청 공안부 국제테러담당 수사원의 프로필, 수사에 협력한 재일 이슬람교도들의 개인정보, 청취기록 등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서적을 통한 개인정보의 공개는 공익의 목적이 없으며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최고재판소,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올해 1월 18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NHK와 민간방송국 5개사가 자사의 TV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업자의 사업금지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신문협회보(2011년 1월 25일자)에 의하면, 18일에 이어 20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상고심 공판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는데, 두 판결 모두 TV프로그램의 전송 주체는 사업자가 아니며 이용자면서 NHK 등 방송국측의 청구를 가각한 2심 판결을 파기, 고법으로 환송했다.

NHK 등은 독점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TV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및 '송신가능화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마네키」TV를 운영하는 나가노(長野)상점에게 사업금지와 1,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네키 TV는 이용자가 소유한 소비자제품의 영상전송기와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 TV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재판부는 나가노상점이 기기를 TV 안테나에 접속시켜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전송의 주체로 인정하고 계약하면 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불특정 공중에 해당하므로 공중송신권, 송신가능화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동향]

PCC, “공무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프레스가제트(www.pressgazette.co.uk) 2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가 트위터 메시지(이하 트윗)의 공표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PCC는 Daily Mail과 일요일판 Independent가 개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도한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작년 런던 교통국 소속 공무원인 Sarah Baskerville은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 보도한 두 언론사에 대해 PCC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의 트윗은 11월 14일자 Independent의 “Baskerville의 괴로움”, 13일자 Daily Mail의 “이 트윗 좀 누가 없애주세요” 제하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Daily Mail은 신청인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의 지도자를 “미쳤다”고 표현하고, “근무 중에” 술이 깨지 않아 힘들다, “너무 피곤해서 퇴근하고 싶다”고 올린 트윗을 공개했다. 또한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메시지 즉 정부의 예산 낭비를 비판하는 보수당 의원에 대한 불평, 노동당 의원이 정부의 SPIN에 대해 공격하는 트윗을 재전송한 메시지 또한 Sally Bercow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 등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Independent는 Daily Mail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서 신청인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Independent는 해당 보도에서 신청인의 Flic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700여명의 팔로어가 볼 수 있도록 쓴 것으로, 두 언론사의 보도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언론사는 신청인의 트위터 계정이 대중에 공개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이 올린 글은 어느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청인의 트위터 계정을 등록(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바 없었고(신청인은 보도 이후 계정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대민 업무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메시지를 보도한 것은 자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두 언론사는 PCC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인이 근무 중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합당한 보도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PCC는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취재하여 기사화하였고, 해당 트위터 메시지가 신청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신청인의 사생활을 “장담치 못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PCC의 Stephen Abell 국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적인 영역인지를 가려야 하는 이러한 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소수의 팔로어를 타겟으로 하여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전국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동향]

누구나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대, 촬영 전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과연 합리적인가

The News Media & The Law(2010, 여름)는 미국에서 휴대폰과 같은 개인적인비디오 장비도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으로 적용해, 비평가들은 누구나 주머니 속에 범죄 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초 빨간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 경계의 95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Anthony Graber는(속도가 조금 빨랐다고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 회색 승용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창바지를 입은 카주알한 차림의 운전자는 총구를 아래로 내리고 Graber에게 다가와 내리라고 명령한 후 본인이 메릴랜드 주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Graber에게 과속 티켓을 발부한 후 떠났다.

Graber가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더라면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소 교통체증이나 사고 순간을 찍어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이 Graber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압수했고,

25살의 메릴랜드주 공군중사인 Graber는 촬영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위반으로 체포, 구속되었다. 해당 조항의 위반은 중범죄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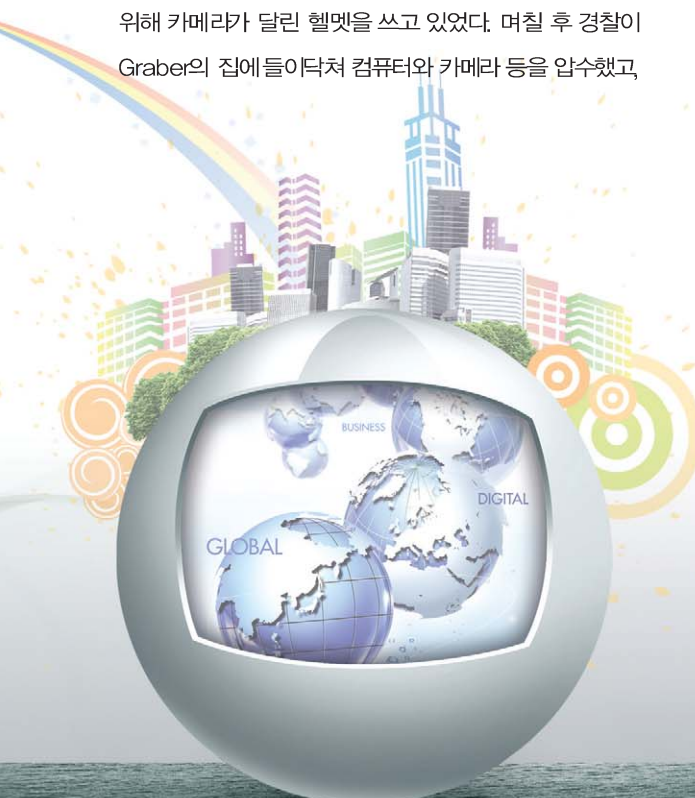
워싱턴포스트 6월호가 이번 사건을 '엔터티 로, USA Today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나 메릴랜드 외에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등 11개 주에서 촬영 이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카메라 달린 휴대폰이 보급되고, 찍은 영상이 수분 안에 인터넷에 퍼지며, CNN, 지역 뉴스통신사, 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시민의 영상을 제보받아 보도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법이다.

미디어 관련 단체 및 자유주의 진영의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조항이 사기 또는 경찰의 작권남용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촬영한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워싱턴 Cato Institute의 법률정책 분석을 맡고 있는 David Rittgers는 "누구나 주머니 속에 '범죄도구'(휴대폰을 휴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무조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주 내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형편이다. Graber는 Harford County에서 기소됐다. 그러나 근처 St. Marys County에서는 휴대폰으로 경찰을 촬영한 한 여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주 검사는





“만약 경찰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촬영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느냐 여부가 기준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대화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주 검사의 사생활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세우는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Graber의 소송대리인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메릴랜드 지부 David Rocah 변호사의 입장이다.

Ritgers 검사는 Graber가 실제로 유죄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Graber의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심원들이 유죄를 결정할 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99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Dateline NBC> 프로그램의 PD들이 몰래 카메라를 이용, 혼잡한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에서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촬영한 사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화 당사자들이 공공장소에 있었으며, 대화 내용이 개인적이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근무 중인 경찰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다. 2006년 뉴햄프셔에서는 형사가 아들에게 강도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을 가정용 보안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의 Cumberland County에서도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고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법 조항으로 인해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이 사적인 영역을 보호받기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테네시주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인 Robb Harvey는 수년 내에 경찰과의 대화를 촬영하는 바람에 체포되는 사건이 점차 늘 것이고, 기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하이오의 Richard Goehler 변호사는 공무원 집행자들이 행여 보도에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만, 취재 중임을 밝히고, 가능하면 공공장소에 머물며 길을 비켜주라고 조언했다. “취재 행위가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Harvey 변호사는 취재 중 경찰이 와서 떠나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되 경찰에게 취재장비를 넘길 필요는 없다고 밝힌다. 대신 경찰과 사측에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 주 의회, 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해석을 두고 각기 월가월부하는 동안 Graber 사건은 계속 중이다.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어 26시간 동안 구금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Harford County의 순회법원에서 10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Graber는 현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으나 4월경 마이애미의 Carlos Miller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으며, 오토바이를 팔고 다시는 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을 무서워하게 됐다. 체포당해본 것이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통신원 보고]

최지선통신원,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박사과정

영국고등법원, 살인사건 피고인의사진 게재는 피고인에 대한편견을 초래하므로 법정 모독에 해당

영국 고등법원은 3월 3일 The Sun과 Daily Mail이 각각 자사 신문의 온라인 판에 살인 사건 피고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재판과 관련하여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라이언 워드는 자동차 정비기사 크랙 워드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세필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신문은 온라인 판에 워드의 사진을 판결이 선고되기 전 각각 5시간, 19시간 동안 게재하였다가 삭제한 바 있다.

세필드 법원의 담당 판사는 어떠한 배심원도 두 언론사가 온라인 판에 게재한 사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을 해고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반면, 도미니크 그리브 법무장은 두 언론사가 워드의 사진을 게재하고, 배심원단들이 이 사진을 봄으로써 판결에 '심각한 편견과 장애'를 초래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앵거스 맥쿨러 왕실 고문 변호사 역시 두 언론사가 "판결을 방해할 실질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문 기사나 사진 게재가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며 1981년도)의 법정 모독에 관한 법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언론사의 변호사들은 "거제되었던 사진이 금방 삭제되었으며 배심원들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지 않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편견의 위험은 대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진의 게재는 즉시 수정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당 판사들은 "워드의 권총을 들고 있는 사진 게재가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이 있다. 사진 자체가 워드의 사진을 본 배심원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상당한 편견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언론사가 게재한 사진이 워드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벽돌로써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은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과거 모습인데, 이를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발생하게 했다는 점이 두 언론사가 법정 모독죄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의 모스 판사는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로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문제가 생기곤 한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정보가 한번 게재되면 완벽하게 제거되기는 힘들며, 설사 배심원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믿는





다해도 법원은 판결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며 “이번 케이스는 인스턴트 뉴스2)에도 형사재판의 진실성과 완벽함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인 보호가 요구된다는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등법원은 조만간 유죄 선고를 받은 두 언론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두 언론사의 범죄 보도와 관련된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언론사들은 범죄 보도에 있어서 사진 게재를 포함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될 것이며, 특히 금방 수정이 가능한 온라인 판 보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프랑스 최고시청각위원회(CSA), 지방선거와 관련해 방송이 지켜야 할 권고사항 발표

프랑스 최고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CSA)는 3월 치뤄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들이 지켜야 할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는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1조, 13조, 16조와 선거 기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서의 정치 다원주의 원칙과 관련한 2011년 1월 4일자 심의에 의거하고 있다.

이 권고 사항은 1차 투표 6주 전인 2월 7일부터 투표 당일 까지 적용된다. 후보자, 정당, 후보 지지 등이 전파를 타는 시간과 정치적 발언이 방송되는 시간 측정과 관련하여 방송 시간을 CSA가 직접 측정하는 채널은 TF1, France 2, France 3

채널의 전국 프로그램, Canal +, M6 등 5개 전국 채널이며, France 3의 지역 방송 프로그램, France 5, France O의 지역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LCI, Itele, BFM TV, BFM, Europe 1, Radio France (France Inter, France Info, France Culture, France Bleu), RMC, RTL 등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채널들의 경우는 방송사들이 직접 시간을 측정하여 매주 CSA에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이밖에 다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채널들은 CSA의 요청에 따라 정치적 발언, 후보자 지지 등 방송 시간을 측정하여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방송사가 직접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 방송사들은 해당 선거 기간 중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녹화 저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CSA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CSA는 선거 기간 중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다원주의 원칙에 대한 심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선거법, 보편적인 선거에서 공화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1962년 11월 6일 법, 유럽의회 대표 선거에 관한 1977년 7월 7일 법,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1977년 7월 7일 법 11조, 1982년 7월 29일 방송법 6조,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1조, 13조, 14조, 16조, 장애우들의 시민성·참여·기회·권리 균등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서의 정치 다원주의 원칙에 관한 2009년 7월 21일 법에 의거하고 있다.

이 심의는 각각의 선거에서 특별한 권고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모든 선거에 적용된다. 방송사들은 투표일 6주 전부터 투표일까지 정치 다원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부분 선거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그 기간에 맞추어 단축된다.

정치 다원주의 원칙의 준수를 위해 방송사들은 선거 관련 뉴스 보도시, 후보자, 후보자 리스트, 정당 등을 공평하게 방송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의 경우, 발언 내용 및 맥락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정치 토론에서 특별히 후보자 및 정당 지지 등이 표현된 경우 별도로 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또, 방송사가 보도하는 코멘트, 요약 등 진실성에 대한 일정한 배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자와 관련하여 인용하는 것들 역시 일반적인 의미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사의 경우 보도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출처를 체계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 경우 원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가 방송사에 초대되는 경우 뉴스의 필요성과 연관되어야 한다.

또한, 이심익은 연간 시청자가 25% 이상인 채널의 경우, 선거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청각 장애우들을 위한 자막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채널들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선거 관련 방송에 대해 장애우들을 위한 자막방송을 하도록 한다.

선거 광고와 관련하여 방송사들은 정치 광고 프로그램 방송이 금지되며, 선거 및 후보자에 관한 광고 메시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언론 매체 광고를 할 수 없고, 선거와 직접 관련된

작가의문학 작품에 대한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선거 캠페인 과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전날부터 방송이 금지되며 마지막 투표소가 닫힐 때까지 어떠한 선거 결과도 방송을 통해 발표될 수 없다.

한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들은 필요한 경우 반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예훼손, 거짓 증언 등은 방송해서는 안 된다.

이심익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선거 기간에 CSA의 특별한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되어 권고 사항을 따르게 된다.

르몽드, 취재원 보호 침해로 검사고소

르몽드는 2월 24일 전 노동부 장관 에릭 보르트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대주주인 릴리안 베탕쿠르 스캔들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원 보호 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르몽드는 베탕쿠르의 가택수사 후, 제라르 다베 기자와 자크 폴로루 기자가 쓴 “경찰이 베탕쿠르 여사의 ‘작은 서류’를 수색 중” 제하의 기사를 2010년 9월 2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베탕쿠르의 변호사는 ‘비밀 수사에 대한 침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인 필립 쿠로에는 기자들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크 폴로루 기자와 가택수사 담당 판사였던 이자벨 프레보스트-데스프레즈 사이에 30여건의 휴대 전화 문자가 오간 것이 드러났다.





현대전화 문자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르 몽드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추재원 보호 침해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개인적 자료가 비검한 방식으로 수집되는 추재원 보호 침해 및 직업상의 비밀 침해를 근거로 르 몽드는 파리 검찰에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슬로바키아 정부, 미디어 법안화 계획

슬로바키아 정부는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는 미디어 법을 개정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월 23일 개정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의 중도우파 연립 내각은 미디어의 자유를 보다 향상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3년 전 좌파 내각인 로버트 피코 정부가 강화한 반론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피코 정부의 미디어 법은 언론이 뉴스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의 반론을 모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부패를 조사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와 같은 국제 인권 감시 기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였고, 유력 일

간지들은 반론권을 규탄하기 위해 1면을 공란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은 강화된 반론권을 제한한 것으로 불안전하고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뉴스 기사("only to cases when the published information is false, incorrect or incomplete")가 보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기자협회(The Slovak Syndicate of Journalists - SSN)도 이 개정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 편집지주 - 1981년은 해당 법률의 제정연도임 통상적으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법령 앞에 제정연도를 표기함

2) The Sun과 Daily Mail이 보도한 뉴스가 인터넷 온라인 판에 게재된 것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뉴스를 지칭한 것임